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실태와 정책과제

The Family Lif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관은 애정적 태도(3.57점) 및 통제적 태도(3.51점), 자율적 태도(3.24점)는 높은 편이나 거부적 태도(2.51점)는 다소 낮았다. 주된 양육자는 부모(89%)로 나타났고, 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56.2%)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한국어 소통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자녀 간의 애착정도는 3.31~3.52점으로 낮았고, 아동부모의 가족응집력은 3.63점, 아동은 3.59점으로 중간 이상에 불과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갈등과 가족생활 부적응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력 제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관계 및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해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42,356명으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23,316명에 이른다. 전체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 3.5%에서 2005년 13.5%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7.6%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결혼의 감소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

한 결혼이민 사증 발급 강화 등 심사기준의 강화에서 오는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¹⁾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13년 기준 75만 명 내외로 우리나라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2013년 19만명²⁾에 달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국적법(제2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2) 안전행정부(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가족 규모는 2020년에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³⁾ 다문화시대의 확대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점차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김유경 외, 2012)⁴⁾.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가족 내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피부색으로 인종적 차별을 받고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경험하기도 한다(김승권 외, 2009; 김미숙 외, 2011; 여성가족부, 2013)⁵⁾. 외국인 출신 부모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언어발달이 늦고 가족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상급학교 취학률이 낮은 추세를 보인다(여성가족부, 2013)⁶⁾.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2011년 4월에는 법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 특히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적응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응집력 등에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하다. 기존 연구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자립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양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응집력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상태와 응집력을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2011년 사회적응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⁷⁾⁸⁾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다문화가족 관계 및 다문화가족 생활응집력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3) 설동훈·서문화·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4)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김유경 외(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6) 2012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7.9%에서 중학교 92.3%, 고등학교 85.1%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고등교육기관은 49.3%로 절반수준에 근접함.

7) 본 조사는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7개 지역(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있는 37개 학교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족 아동(한국인 아버지+결혼이주여성) 중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386명이 조사 완료됨.

8) 본 조사자료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가족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자료로서 2011년에 수집되어 현재와는 4년간의 갭이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및 부모자녀 간 관계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유의미한 자료로 사료됨.

2.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조직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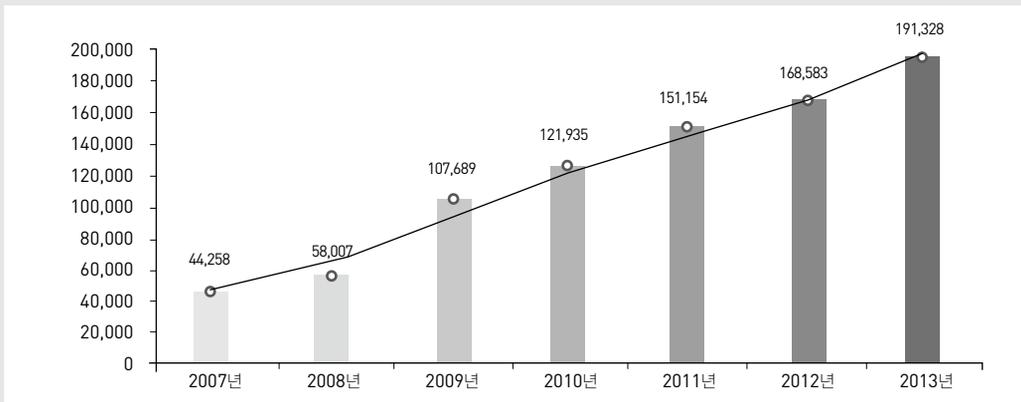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광의개념과 협의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 개념은 가족 중 한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한다⁹⁾. 또한 정부 정책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된다.

본고는 다문화시대에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결혼이민자와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협의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적용코자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문화가족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포함코자 하며,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국적의 여성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가족의 자녀를 말한다. 즉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기존 구성원인 내국인과 결합하여 형성된 가족의 자녀로 정의한다.

그림 1. 다문화가족 아동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9)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다문화가족 아동의 현황

2000년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1%에 육박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로 인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2007년 44,25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121,935명으로 3년간 175.5%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91,328명으로 3년간 56.9%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별 변화추이를 보면, 2007년 만 6세 이하가 전체 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8%(26,4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만 7~12세가 32.5%(14,392명)로 많았고, 만 13~18세는 7.7%(3,421명)에 불과하였다. 2010년 만 6세 이하는 62.1%(75,776명)로 2007년에 비해 2.3%p가 증가한데 비해, 만 7~12세는 25.1%(30,587명)로 7.4%p가 감소하

였고, 만 13~18세는 12.7%(15,572명)로 5.0%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3년까지 지속되어 2013년 만 6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1.0%(116,696명)로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만 7~12세도 23.6%(45,156명)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만 13~18세는 15.4%(29,476명)로 2007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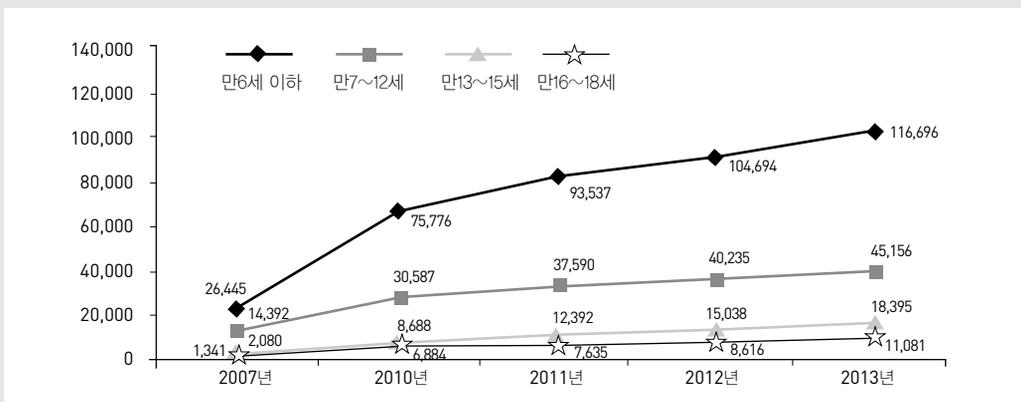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 출신이 49,458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조선족 42,294명(22.1%)과 중국 출신이 37,084명(19.4%)로 많았다. 다음은 필리핀(18,020명)과 일본(17,806명), 캄보디아(5,961명)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국가는 미미하였다.

4.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1)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림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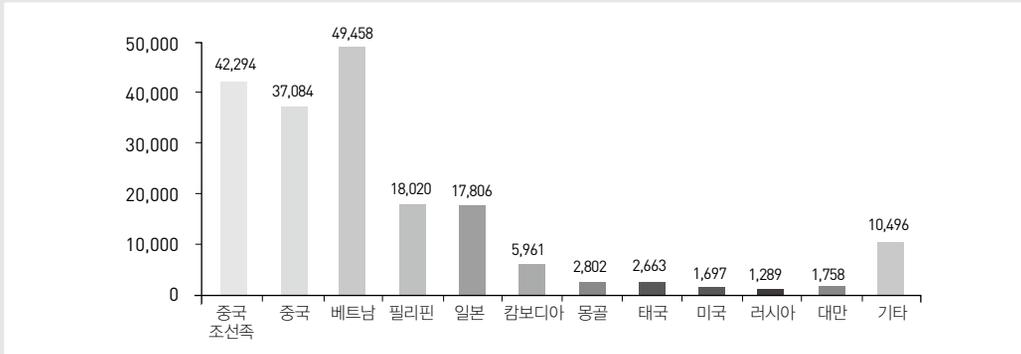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그림 3. 다문화가족 아동의 국적분포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관련이 높으므로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조사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7.9%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대졸 이상이 42.0%로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다소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72.9%, 대학 이상이 27.1%로 고졸 이

하의 저학력 소지자가 2.7배 많았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¹⁰⁾,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는 고등학교 이하가 79.2%, 대학 이상이 20.8%로 2011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여성결혼 이민자의 교육수준은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대졸 이상이 2배나 많았다. 한편, 2009년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고졸 이하가 76.3%, 대졸 이상이 23.8%로 2011년 조사결과는 전체와 거의 유사하

표 1.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아동 모	아동 부
중졸이하	12.6	23.7
고졸	45.3	49.2
대졸이상	42.0	27.1
계	100.0(334)	100.0(334)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결혼이민자에 한정하는데 비해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결혼이민자에서 귀화자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의 특성비교는 2009년 조사결과가 적합함.

었다. 부부간의 학력차이는 대졸 이상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수준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약 15%p 높아서 부부간의 학력차이는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부(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1년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한 비율은 63.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비취업보다 1.7배 높았다. 배우자가 취업한 비율은 71.4%이었고, 비

취업은 28.6%로 취업자가 2.5배 높았다. 2009년 조사결과,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36.9%로 2011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보다 1.7배 높았고,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취업은 85.6%로 2011년 조사가 전체보다 14.2%p 낮았다.

2011년 여성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을 합친 비율이 53.9%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200~300만원 미

표 2.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취업 여부

(단위: %, 명)

구분	아동 모	아동 부
취업	63.4	71.4
비취업	36.6	28.6
계	100.0(334)	100.0(334)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은 25.3%로 4분의 1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20.8%로 5분의 1에 해당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경제상태가 낮음을 보여준다. 2009년 조사결과,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는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이 68.8%, 200~300만원 미만은 21.2%, 300만원 이상은 10.1%이었다. 2011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 분포는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보다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은 적은데 반해,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많아서 가구소득수

준은 2011년이 2009년보다 다소 높았다.

2) 자녀양육관¹¹⁾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관은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녀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2.51~3.57점으로 중간 전후의 분포를 보였다. 애정적 태도(3.57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통제적 태도(3.51점), 자율적 태도(3.24점), 거부적

11) 본고에서 사용한 자녀양육관 척도는 Schaefer(1959)의 MBR(Maternal Research Instrument)를 수정 보완한 황선명(1994)의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에서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측정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점수가 높음을 의미함.

표 3.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백분율	사례수
100만원 미만	18.2	56
100~200만원 미만	35.7	110
200~300만원 미만	25.3	78
300만원 이상	20.8	64
계	100.0	308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태도(2.51점) 순으로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관은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그리고 자율적 태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거부적 태도는 다소 낮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양육관의 차이를 보면, 애정적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동포 및 한족, 기타 국가 출신과 연령이 낮은 경우, 고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부적 태도는 여성

표 4.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태도

(단위: 점, 명)

특성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전체		3.57	2.51	3.24	3.51
아동 모의 출신 국가	일본	3.45	2.57	3.29	3.38
	중국동포 및 한족	3.81	2.19	3.22	3.69
	동남아시아	3.38	2.80	3.11	3.45
	기타	4.20	2.20	3.00	4.20
아동 모의 연령	39세 이하	3.77	2.47	3.17	3.72
	40~49세	3.53	2.46	3.27	3.37
	50~59세	3.26	2.89	3.21	3.6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3	2.63	2.93	3.61
	100~200만원 미만	3.58	2.55	3.30	3.50
	200~300만원 미만	3.57	2.42	3.24	3.55
	300만원 이상	3.62	2.31	3.45	3.33
(분석대상수)		(333)	(331)	(331)	(332)

주: 1) 결혼 전 국적이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포함
 2) 자녀양육태도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및 통제적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이민자가 일본과 동남아시아 출신, 연령이 높은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점수가 높았다. 자율적 태도는 일본 출신과 40대 이상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높았다. 통제적 태도는 중국 동포 및 한족과 기타 국가 출신, 30대 이하와 50대 여성결혼이민자인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높은 특성을 보였다. 부모의 애정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정(正)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부모의 애정적 자녀양육관이 낮은 경우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정적 태도가 낮은 다문화가족집단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거부적 및 통제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양육실태

다문화가족의 양육실태는 주된 양육자 및 양육상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된 양육자란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된 양육자로 아동의 모인 비율이 72.3%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아버지는 16.4%로 일부만이 해당되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가족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013년 조사결과, 일반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가 93.7%로 대다수 해당되었고, 아버지 4.1%, 조부모 2.3%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¹²⁾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주된 양육자를 보면, 여

성결혼이민자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인 경우는 어머니가 65.2%로 2/3에 해당되었고, 아버지는 21.7%로 1/5의 분포를 보였으며, 조부모와 기타는 모두 6.6%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버지와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다. 40~49세는 전체와 유사하여 부모에 의해 양육하는 비율이 90.5%로 대다수에 해당되었으며, 50~59세는 타 연령층에 비해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율이 낮았고, 아버지와 기타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 및 40대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서 아동 정서 및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언어생활과 생활관습 및 문화 적응, 그리고 학습지도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예상되어 다문화 아동의 자질향상 및 적응 제고를 위해 아동양육 관련 전문지식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별로는 양육자로 아동 모인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 취업자인 경우 조모가 다소 높았고, 비취업자인 경우는 아동 부가 높았다. 큰 차이는 없으나 취업자인 경우가 비취업자보다 양육자로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다소 높아 부모-자녀 간의 애착 및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양육자로 아동 모인 비율은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100만원 미만은 아동 부가, 100~200만원 미만은 기타가 전체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200~300만원 미만은 아동 모와 조부모인 비율이 높는데 비해, 300만원 이상은

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 부와 기타인 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부모가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고, 고소득층은 부모 외에 기타 인력이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와 자녀 간 애착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이 자녀양육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90.6%이었고, 어려움이 없다는 9.4%로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으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양육비·교육비용의 부담이 56.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이 12.8%이었으며, 이외에 자녀와의 갈등, 자녀양육방식으로 인한 갈등, 문화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방과 후 자녀 맡길 곳이 없다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리 일반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54.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표 5.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주된 양육자

(단위: %, 명)

특성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계(수)
전체		72.3	16.4	3.3	0.3	7.6	100.0(329)
아동 모의 연령	39세 이하	65.2	21.7	6.6	0.0	6.6	100.0(92)
	40~49세	77.1	13.4	2.0	0.5	7.0	100.0(201)
	50~59세	62.9	20.0	2.9	0.0	14.3	100.0(35)
아동 모의 취업 여부	취업	72.6	15.2	4.1	0.5	7.6	100.0(197)
	비취업	70.4	19.1	2.6	0.0	7.8	100.0(115)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73.2	21.4	1.8	0.0	3.6	100.0(56)
	100~200만원 미만	71.3	15.7	3.7	0.9	8.3	100.0(108)
	200~300만원미만	78.9	9.2	5.3	0.0	6.6	100.0(76)
	300만원 이상	67.2	18.8	0.0	0.0	14.1	100.0(64)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40.4%), 자녀양육과정 스트레스(35.9%), 자녀안전·생활지도의 어려움(33.1%), 학습지도 어려움(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¹³⁾. 따라서 다문화 및 일반가족 모두 가장 큰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양육

비·교육비 부담을 지적하였고, 나머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양육지원으로 양육비·교육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한국어 소통능력 강화와 자녀양육정보 제공, 방과 후 돌봄 장치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3)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방과 후 자녀 맡길 곳 부재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많은 편이었고, 40대는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및 양육방식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문화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이 많았다. 50대는 자녀와의 갈등과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많은 편이었다. 아동이 중도입국자녀인 경우는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이 많았고, 이어서 자녀와의 갈등, 문화정체성으로 인한 혼란 등에도 응답하였으며, 한국출생 자녀인 경우는 자녀양육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교육비 부담과 문화차이로 인

한 정체성 혼란이 높았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차이를 보여서 생애주기 및 자녀 출생지, 가구소득 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다문화가족 관계 및 응집력

1) 부모·자녀 관계¹⁴⁾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3.31점으로 중간 이상이며 아동의 어머

표 6.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어려움 없음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	방과 후 자녀 맡길 곳 없음	자녀 양육 방식으로 남편/시부모와 갈등	자녀와의 갈등	양육비, 교육비 부담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기타	계(수)
전체		9.4	12.8	3.3	4.9	7.9	56.2	4.6	0.9	100.0(329)
아동 모의 연령	39세 이하	10.7	11.8	5.4	3.2	7.5	57.0	4.3	0.0	100.0(93)
	40~49세	9.5	13.4	2.5	6.0	7.0	55.2	5.0	1.5	100.0(201)
	50~59세	5.9	11.8	2.9	2.9	14.7	58.8	2.9	0.0	100.0(34)
해당자녀 중도입국 여부	중도입국	18.1	15.2	3.0	3.0	9.1	42.4	6.1	3.0	100.0(33)
	중도입국 아님	8.0	12.5	3.5	4.9	8.0	57.8	4.5	0.7	100.0(287)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	14.3	1.8	8.9	3.6	60.7	7.1	0.0	100.0(56)
	100~200만원 미만	1.8	10.1	4.6	2.8	6.4	68.8	4.6	0.9	100.0(109)
	200~300만원 미만	12.0	14.7	5.3	5.3	9.3	48.0	4.0	1.3	100.0(75)
	300만원 이상	21.9	14.1	1.6	4.7	12.5	40.6	3.1	1.6	100.0(64)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애착보다 약간 더 높았다. 우리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면 0~2세와 3~5세 아동 모두 4점 만점에 3.6점으로(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조사되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모애착은 66.2~70.4점에 비해 일반아동은 90.0점으로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애착도가 높았고, 중도입국 자녀가 국내 출생자녀보다 애착도가 높았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1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다소 높았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출생 자녀가 중도입국자녀보다 애착도가 높았고, 월 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경우 애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의 연령이 젊은 경우 아동의 애착이 높았고, 중도입국 자녀출신은 어머니 애착이, 국내출신은 아버지 애착이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 아버지 애착이 다소 높았다. 이는 아동양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가족의 인구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부모애착과도 밀접함을 의미하며, 아동과의 애착이 낮은 중·장년층 부모, 중도입국자녀를 가진 경우, 비교적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표 7.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단위: 점, 명)

특성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전체		3.52	3.31
아동 모의 연령	39세 이하	3.71	3.44
	40~49세	3.46	3.29
	50~59세	3.28	3.08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51	3.28
	중도입국 아님	3.54	3.37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3.53	3.22
	100~200만원 미만	3.42	3.15
	200~300만원 미만	3.60	3.31
	300만원 이상	3.52	3.52
(분석대상수)		(329)	(321)

주: 부모에 대한 애착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본고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n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또는 또래 애착정도 개정본(IPPA-R)을 사용함. IPPA-R(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3개 문항, 아버지에 대한 애착 3개 문항을 사용함.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족응집력¹⁵⁾

다문화가족생활의 적응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족응집력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다문화가족 아동부모의 가족응집력은 5점 만점에 3.63점, 아동은 3.59점으로 아동의 가족응집력이 부모보다 다소 낮아서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이 다소 떨어짐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로는 다문화가족 아동부모의 가족 간의 몰입은 5점 만점에 3.60점,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3.67점, 가족원의 적응력은 3.61점으로 모두 중간을 상회하였다. 이 중에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고, 가족 간의 몰입과 가족원의 적응력은 비슷하였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 간의 몰입은 5점 만점에 3.59점, 가족 간의 의사소통 3.62점, 가족원의 적응력은 3.55점으로 3개 하위 영역에서 부모가 아동보다 가족응집력이 높았고, 부모와 아동 모두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내 적응은 가족 간 몰입과 적응력이 다소 떨어져서 가족 간의 지지 강화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적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가족생활 응집성과 하위영역의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생활 응집성은 부모와 아동의 경우 모두 모의 출신국가가 중국동포 및 한족,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아동이 국

내출생자녀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높았다. 모의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인 경우는 부모가 아동보다 가족응집성이 높았고, 39세 이하와 50대인 경우는 아동이 부모보다 가족응집성이 높아서 양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가족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가족생활의 적응이 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족응집력이 낮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출신, 40~50대 여성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가진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적응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족 간의 몰입,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원의 적응력 등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단 아동이 중도입국 자녀인 경우 국내출생 자녀보다 가족 간의 몰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영역과 차이를 보였다.

6. 나가며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5~10년에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족 아동 중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이 대폭 늘어나서 부모 간의 언어, 문화 및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가족생활 적응과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중도입국자녀의 증가로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

15) 본고에서 사용한 가족응집력 척도는 어은주 외(1995)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34개 문항 중에서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음. 하위영역은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로 가족간의 몰입 6개 문항, 가족간의 의사소통 6개 문항, 가족원의 적응력에 3개 문항을 사용함.

표 8.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다문화가족생활 응집성

(단위: 점, 명)

특성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가족생활 응집성	
		부모	아동	부모	아동	부모	아동	부모	아동
전체		3.60	3.59	3.67	3.62	3.61	3.55	3.63	3.59
아동 모의 출신 국가	일본	3.50	3.57	3.61	3.62	3.53	3.52	3.55	3.57
	중국동포 및 한족	3.74	3.72	3.80	3.74	3.71	3.71	3.75	3.72
	동남아시아	3.57	3.48	3.58	3.50	3.57	3.44	3.57	3.47
	기타	4.20	3.77	4.30	4.10	4.00	3.53	4.17	3.80
아동 모의 연령	39세 이하	3.74	3.73	3.84	3.80	3.78	3.68	3.79	3.74
	40~49세	3.55	3.50	3.60	3.53	3.55	3.46	3.57	3.50
	50~59세	3.50	3.74	3.62	3.75	3.48	3.76	3.53	3.75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중도입국	3.59	3.60	3.65	3.65	3.59	3.59	3.61	3.61
	중도입국 아님	3.60	3.50	3.80	3.80	3.73	3.73	3.71	3.68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미만	3.51	3.71	3.55	3.75	3.47	3.65	3.51	3.70
	100~200미만	3.52	3.46	3.59	3.45	3.53	3.40	3.55	3.44
	200~300미만	3.69	3.46	3.74	3.59	3.67	3.45	3.70	3.50
	300이상	3.61	3.74	3.75	3.78	3.69	3.75	3.68	3.76
(분석대상수)		(329)	(334)	(331)	(328)	(329)	(331)	(329)	(334)

주: 1) 결혼 전 국적이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포함.
 2) 가족생활 응집성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 응집성(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정책은 초기적응에 집중되어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갈등과 부적응을 해소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글로벌 차세대 양성을 위해서 다문화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응집성 제고를 위해 가족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서로 연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이 되어 가족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도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약 13%로 적지 않았으며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부모와의 애착도는 5점 만점에 3.31~3.52점으로 상당히 저조하였는데 이는 언어소통과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가족생활의 응집성을 보여주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동이

5점 만점에 3.6점을 조금 넘어서 의사소통으로 가족생활적응과 응집성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동시에 이들이 지닌 강점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병행하여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를 통해 정책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모국어습득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갈등해소와 건강성 제고를 위해 심리·정서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언어소통 및 문화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를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 등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간의 갈등은 가족응집력에 부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생활 응집성이 낮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동적인 갈등과 부적응을 해결하여 심리·정서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가족간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대토록 한다. 다문화가족 간에 결혼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및 위기 극복 사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세대육성을 통한 사회통합 모색을 위해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은 학교 및 사회에서 차별과 왕따 등을 경험하고¹⁶⁾ 이는 학교 및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생활적응과도 관련이 높으므로 학교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보는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 강화를 위한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 정립과 부모애착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긍심 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모-자녀간에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응집력이 약한 다문화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관계를 증진하고 가족지지를 강화한다. 본고 결과, 다문화아동 부모의 가족응집력은 5점 만점에 3.63점, 아동은 3.59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가족응집도는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양호한 사회

16)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경제적 배경에서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은 가족응집과 밀접하고 가족응집력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특성을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과 함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해하고 적응하여 가족응집력을 증진시키는 신념체계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의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가족생활 적응능력이 향상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적응 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을 통해 가족지지 능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본고 결과,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국내출생 자녀보다 가족응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 아동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부적응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양쪽 부모의 외모 차이와 이중 문화가 혼재된 가족 교육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특히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출신국가에서 경험한 가족 문화와 한국의 가족문화 차이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은 다른 외모, 이중언어, 그리고 이중문화로 인해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을 통한 가족생활적응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구사회배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